

2021년도 제251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

I. 회의 개요

- 일 자 : 2021. 9. 24.(금요일)
- 방 법 : 온라인심의
- 참 석 자 :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2분과위원회 위원 5명 참석
 - 심의위원 : 권현영(분과위원장), 김민아, 박정인, 임형주, 홍지만 위원
-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

〈의결안건〉 ※ 안건 검토 :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오진해 전문위원

-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,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

II. 회의내용 및 결과

-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,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
 - 주요내용: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·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59건(안건번호 제2021-129699호~129757호)
 - 회의결과: 불법복제물등에 해당되는 심의안건 게시물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·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고,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

Ⅲ. 주요내용

- A 위원: 부결대상 안건 없습니다. 모두 가결 처리함이 상당합니다.
- B 위원: 순번 1번~59번 {‘★★★★’사이트의 [중점](영화)레미니센스(2021)’ 등 63건의 게시물}는 불법 복제한 영상저작물(영화), (방송)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됨. 다만,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.
- C 위원: 순번 1번~59번의 각 게시물은 불법 복제한 영상저작물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무단으로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저작권법상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있음 단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경우에는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이 타당함.
- D 위원: 순번 1번~59번, 63건의 게시물은 불법 복제한 영상저작물(영화)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. 다만,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것이 타당함.
- E 위원: 순번 1~59번의 각 게시물은 불법 복제한 영상저작물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저작권법 제133조의 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가결 의견임. 단 이미 삭제되었거나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면 될 것임.

2021년 제246회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록이
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.

2021. 9. 24.

분과위원장 권현영

위원 김민아

위원 박정인

위원 임형주

위원 홍지만